

대전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2가단1120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5.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9. 5. 17. 접수 제149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김영호

부동산 목록

충청남도 논산시 C 임야 4048㎡ 중 지분 2분의 1 끝.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B (이하 '채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A 은 채납자의 부친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소외 B 의 채납내역 및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가. 소외 B 의 부과 경위 및 채납내역

소외 B 은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모집수당 수입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아래 <표1>과 같이 세종세무서에
총 374,854,190원의 국세가 채납되어 있습니다(갑 제2호증 국세채납내역 참조).

<표1> 소재기일 현재 소외 B 의 국세채납 내역

(단위 : 원)

세목	귀속	최초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채납액	비고
종합소득세	2016	2020.01.31	2015.12.31.	135,858,380	166,383,260	세종세무서
종합소득세	2015	2020.01.31	2014.12.31.	167,798,600	205,553,030	세종세무서
종합소득세	2014	2020.02.08	2013.12.31.	2,396,750	2,917,900	세종세무서
합계				306,053,730	374,854,190	

나. 피보전채권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그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각 성립하며,

종합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 1의 소외 B의 총 채납금액인 374,854,190원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동산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 기준일(2019. 5. 17.)이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소의 B는 소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부에 2019. 5. 17. 중여를 원인으로 부친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의 B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며, 소의 B이 피고에게 중여한 행위는 그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표2>참조)

<표2> 사해행위 당시 소의 B의 채무초과 여부

(단위 :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충청남도 논산시 C	7,063,760	이 사건 부동산 (기준시가)
소계			7,063,760	
소극재산	조세채무	종합소득세	306,053,730	고지세액
소계			306,053,730	
순자산			△298,989,970	
사해행위			△7,063,760	
채무초과			△306,053,730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소의 B는 2019. 5. 1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중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당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피고는 사해행위당시 소외 B의 부친으로 이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채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5. 사해행위를 안 날

위와 같이 소외 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일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6. 결 론

이러한 사실로 보아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맺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소외 B의 남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채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증여를 한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B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